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2296호
2026년 8월 5일
수요일

공 고

○ 공 고 제 1459 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도 시 재 생 과 2
공시송달 공고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1459호

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
공시송달 공고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) 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(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) 및 제30조의2(이행강제금)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)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8. 4.

남동구청장

1. 공고내용: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6. 8. 5. ~ 8. 19.(14일간)
3. 공고장소: 남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및 현황

위반행위자		불법행위 내역			
성 명	주 소	위치(지번)	행위 내용	위반면적(m ²)	이행강제금(원)
유○○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○○○번길 ○○	운연동 459-54, 459-63, 508-7, 458-16, 459-4, 459, 458-9	불법성토	800	30,918,000

5. 의견제출처: 남동구 도시재생과(☎ 032-453-2975, FAX 032- 453-2959)

6. 기타

- 가.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공고기한 내에 남동구 도시재생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위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 없는 경우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